Mastern
INVESTMENT MANAGEMENT

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내용 공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5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Ⅰ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
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③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 및 그 외 투자기구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상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포함한다)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Ⅱ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
⑤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운용 관련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⑥ 집합투자·투자일임·신탁재산의 구성내역·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

⑦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

① 고유재산 운용부서

② 리츠재산 운용부서

③ 펀드재산 및 일임재산 운용부서(실제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용부문 내 부서는 제외한다)

④ 기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부서

IV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V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1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

-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,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,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임을 컴플라이언스실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

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
②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
③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
④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. 다만, 내부규정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
-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

②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③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

④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
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
⑥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(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

2. 대응방안

① 담당자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고 이해상충의 유형, 위험의 수준 및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해당 거래의 실행 여부를 논의

②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, 해당 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거래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, 그 외 교류방법은 제8조(예외적 교류 또는 겸직의 방법)를 준용

Ⅵ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: 준법감시인

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: 컴플라이언스실